

파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8
----------	-----

제출년월일 : '96.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각종 자연재해에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예방위주의 재해대책추진을 위하여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1995. 12. 6. 법률제4993호)함에따라 동법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거 파주시수방단을 설치운영하여 자연재해를 예측또는 예찰하고 수방·구호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히 하고자 파주시수방단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함.

☐ 주요골자

가. 파주시수방단의 임무 (안제2조)

- 재해사전대비 점검 정비
- 재해발생 우려지역 예찰, 경계 주민대피 유도
- 재해응급대책
- 방재의 날 행사참여
-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

나. 파주시수방단의 조직(안제3조)

- 재해우려지역 거주주민
- 방재관련기관 및 기업체 소속 직원
- 기타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 수방단원에서 제외될 자

- 17세미만 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 고교생 및 대학생
- 경찰관 및 군인
-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

라. 파주시수방단의 단장(안제4조)

- 단원중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마. 수방단의 편성 및 임무(안제5조)

- 본부 및 경계반 : 10명 내외
 - 주민대피 유도
 - 재해유관기관간의 연락유지
 - 주민의 질서유지 및 통제
 -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물의 통제
 - 기타 다른반에 속하지 않는 업무
- 복구반 : 30명 내외
 -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
 - 피해시설물의 긴급복구
 - 각종 장비 및 자재의 동원
 - 재해지구의 정리 정돈
- 구호반 : 10명 내외
 - 이재민에 대한 급식조달 및 사후처리
 - 사망자 부상자등 인명피해자 조치
 - 재해발생지역의 방역실시
 - 담요등 구호물자 조달

바. 파주시수방단의 소집해제 및 기록보존(안제7조)

-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해제하여야 한다.
- 소집결과는 3년간 보존

- ☐ 개정조례(안) : 불 임
- ☐ 관계법령발췌 : 불 임
-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 기타 참고사항 : 준칙안

파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한다)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파주시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수방단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법제22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재해사전대비 점검·정비
2.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할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
3. 법제36조제1항의 재해응급대책
4. 법제23조제3항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령”이라한다)제25조에의한 방재의 날 행사참여
5.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

제3조(조직) ①수방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3. 기타 시장이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제1호의 주민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

1. 17세 미만자 및 60세 이상인 자
2. 고교생 및 대학생
3. 경찰관 및 군인
4.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

제4조(단장) ①단장은 단원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②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수방단업무를 총괄하며 수방단을 대표한다.

제5조(편성)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각반별 인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부 및 경계반 : 10명 내외

가. 주민대피 유도

나. 재해유관기관간의 연락유지

다. 주민의 질서유지 및 통제

라.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계

마. 기타 다른반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복 구 반 : 30명 내외

가.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

나. 피해시설물의 긴급복구

다. 각종 장비 및 자재의 동원

라. 재해지구의 정리·정돈

3. 구 호 반 : 10명 내외

가. 이재민에 대한 급식조달 및 사후처리

나. 사망자·부상자등 인명피해자 조치

다. 재해발생지역의 방역실시

라. 담요등 구호물자 조달

제6조(소집해제 및 기록보존) ①시장은 영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소집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3년간 기록 보존 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필요한 사항)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말지 세1호시식】

파주시수망단 편성 및 소집현황

[illegible]

관계법령 발췌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수방단의 설치·운영) ①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이하 "수방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재해예방) ①방재책임자는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방재조직의 정비
2. 방재교육·훈련 및 재해예방에 관한 홍보
3. 방재용 물자와 자재의 비축 및 정비
4. 방재시설물의 점검·정비
5. 재해위험시설의 점검·정비
6. 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및 정비
7.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방재책임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방재시설 및 재해위험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방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방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방재책임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방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6조(재해응급대책) ①방재책임자는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할 때에는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해응급대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2. 수방·지진방재·진화 기타의 응급조치와 구호
3.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4. 방역과 방법 기타 질서의 유지
5. 긴급 수송 및 구조수난의 확보
6. 급수수단의 확보
7. 기타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방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방재책임자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방재책임자나 관계기관의 경우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방재교육·훈련 및 홍보)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조체제의 구축과 방재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재교육·훈련과 재해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재교육·훈련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교육·훈련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재의 날”을 정하여 재해예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방재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25조(방재의 날 행사)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하여 재해취약요인 일제점검, 방재훈련 및 방재 행정세미나등 방재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②중앙재해대책본부장 및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은 국민의 방재의식을 고취시키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재의 날 행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3조(수방단의 조직기준)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방단은 당 해 지역의 주민으로 조직하되, 단장 1인을 포함한 단원 15인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방단에 본부 및 경계반·복구반·구호반 등을 둔다.

제14조(수방단의 교육훈련 및 소집) ①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수방단에 대하여 매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1회이상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방단원의 비상소집
2. 재해사전대비 점검 및 그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요령
3. 방재의식의 계몽
4.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

②시장·군수·구청장이 수방단원을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수방단원소집통지서를 수방단장에게 교부하고, 수방단장은 즉시 당해 단원들에게 이를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방단원소집통지서를 교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비상소집 할 수 있다.

③수방단원으로 편성된 민방위대원이 수방단으로 소집되는 경우에는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23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교육을 면제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수방단원이 소집된 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